

수신자 : 제천시의회 의장

### 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

지방자치법 제66조(의안의 발의)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의안의 제출 발의)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#### □ 의원발의 조례안

- 제천시 국·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붙 임 : 1. 발의서명서

2. 제천시 국·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끝.

2007. 11.

발의자 박성하 의원 ( )인

외 4인

제천시 국·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
발의 서명서

| 의원 성명 | 서명 또는 날인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|-----|
| 최 창중  | 최 창중     |     |
| 박 기선  | 박 기선     |     |
| 김 용조  | 김 용조     |     |
| 양 윤기  | 양 윤기     |     |
| 박 성자  | 박 성자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|

# 제천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1208 |
|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07. 11.  
제출자 : 박성하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-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내·외 도시간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, 지방분권시대의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, 지역의 실질적인 국내 및 국제교류·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를 추진(안 제 조)
-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받았을 경우 상대 자치단체의 지역여건, 행정 규모, 외교적 특수성 등을 유의사항으로 정함
- 자매결연 체결시 시의회의 동의 규정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도록 규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1항
- 나.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: 해당 없음

## 제천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·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(이하 “국내·외 도시”라 한다)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,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결연의 종류)** 제천시와 국내·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협력 도시로 한다.

**제4조(결연의 원칙)** ①자매·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 국내·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,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.

③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**제5조(사전검토)** ①시장은 국내·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인구·면적 및 행정·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
2. 산업,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

② 국내·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**제6조(사전교류)**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·의회·사회단체 대표·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.

**제7조(동의)** ① 시장이 국내·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결연절차 등)**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·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·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.

**제9조(교류내용 및 사후관리)**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·예술·체육교류
2.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
3.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
4.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
5.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

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결연의 취소)**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·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1조(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)**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·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 업무를 민간인(단체를 포함한다)(이하 “민간인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 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,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1조②항은 해당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I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 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  3. 결산의 승인
 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 
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 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 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· 처분
 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 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 
포기
  9. 청원과 수리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